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13

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서일준

이용호 · 이철규 · 임병헌

정점식 · 정희용 · 조명희

최형두 · 황보승희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은 1962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・예술적・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.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.

그러나, 이제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,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,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 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, 모든 국민이 보다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(안제4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(의안번호 제17521호), 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5호)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4호),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1호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 안번호 제17520호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18호), 「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512호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7523호), 「세계유산의 보존・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7호), 「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| (의안번호 제17522호), 「한국전 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유산 보호계획"으로 한다.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"을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자연

제6조제3항제1호 중 "문화재"를 "국가유산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조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0조"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"(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)"을 "(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"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"를 "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"매장문화재"를 "매장유산"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"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)"를 "(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매장문화재 중"을 "매장유산 중"으로, "문화재에 대해서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"를 "매장유산에 대해서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

사에 관한 법률 _ 제14조"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"(문화재 복원)"을 "(국가유산 복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문화재에 대하여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"를 "국가유산에 대하여는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위원회"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"로, "등록문화재"를 "등록문화유산"으로, "임시지정문화재와"를 "임시지정문화유산과"로, "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르며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며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・보호물・역사문화환경,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임시지정자연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고"로 한다.

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국가지정문화재"를 각각 "국가지정유 산"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16조제3항"을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3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	제4조(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
계) ① (생 략)	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	②
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	
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	
에는 「문화재보호법」 제6조	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
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, 「국	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
토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국토	문화유산기본계획, 「자연유산
종합계획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	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	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
전 5개년계획, 「지역 개발 및	<u> </u>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	
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	
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	
여야 하며, 서로 조화와 균형을	
이루도록 하여야 한다.	
제6조(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) ①	제6조(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) ①
·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	③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	
위촉한다.	
1. 역사, 문화, <u>문화재</u> , 도시계획,	1 <u>국가유산</u>
경관, 지역개발, 관광 등에 관	

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2. · 3. (생략)
- ④ ~ ⑦ (생 략)

제8조(기초조사) ① (생 략)

-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「문화재보호법」 제10조</u>에 따른다.
- 제11조(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)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 산의 발굴・복원 및 체계적 정 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「매장문 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」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<u>매장문화재</u> 발굴을 위하 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- 제12조(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)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<u>매</u> 장문화재 중 역사적 · 예술적 또 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<u>문화</u>

2.・3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8조(기초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
<u> 관한 법률」 제10조</u> .
제11조(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
<u>발굴)</u>
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
<u>13조</u>
<u>매장유산</u>
제12조(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
<u>치)</u> <u>매</u>
<u>장유산 중</u>
매 장

재에 대해서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 다.

제13조(문화재 복원) 문화재청장 저 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·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하여는 「문화재보호 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.

제16조(행위 등의 제한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・보호물・역사문화환경,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르며, 정비구역 내에서「고도 보존 및

유산에 대해서 「매장유산 보호
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-
세13조(국가유산 복원)
<u>국</u>
가유산에 대하여는 「문화유산
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제8조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
활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
<u>른 위원회</u>
세16조(행위 등의 제한) ① (현행
과 같음)
2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
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
른 지정문화유산과
<u>능</u>
록문화유산
<u>임시지정문화유산과</u>
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
관한 법률」에 따르며, 「자연

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 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 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 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 에 대해서는 「고도 보존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다.

③ • ④ (생 략)

- 제19조(정비사업 시행의 위탁) ① 저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1.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·조 사 및 연구
 - 2.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 · 복 원 및 정비
 - 3. (생략)
 - ② · ③ (생 략)
- 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・② | 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・② (생 략)
 -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 급, 실적 확인,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「문화재보호

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
률」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
등과 그 보호구역・보호물・역
사문화환경, 같은 법 제18조에
따른 임시지정자연유산과 위치
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
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
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고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19조(정비사업 시행의 위탁) ①
·.
1. <u>국가지정유산</u>
2. <u>국가지정유산</u>
3 (혀행과 간을)

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(현행과 같음)

3	
	「문화유산의

법」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16조제3항----..